



시 보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결	기 관 의 장

제1348호 2018. 8. 27.(월)

훈 령

- 목포시 공무원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 ----- 2

고 시

-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 14

공 고

- 제342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부의안건 공고 ----- 16

기 타

- 시정알림판 ----- 17

회람							
----	--	--	--	--	--	--	--

목포시 훈령 제814호

「목포시 공무원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 규정」 일부개정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18년 8월 27일

목 포 시 장

목포시 공무원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

제2조(용어의 정의) 제7항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제27조(복무관리자 및 복무상의 의무) 제5항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법령 및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고 친절·공정해야 되며, 질서를 존중해야 한다.

제34조(연차유급휴가) 제3항의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③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공무원근로자 등에 대하여는 1개월간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제56조(산전·산후휴가, 유산휴가) 제4항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 제5항을 삭제한다.

④ 여성 공무원이 임신 이후에 유산, 사산하였을 경우 유급휴가를 다음과 같이 준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임신기간이 16주 미만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3.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⑤ 삭제

[별표 1, 2, 별지 제4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공무직근로자 정수표(제6조 제4항 관련)

1. 공무직근로자

부 서 별	계	단 순 노 무 원					도 보 수 원	환 미 화 경 원
		소 계	행 보	정 조	시 장 유	설 비 지	현 지 점	장 도 검
계	526	346	260	54	32	14	166	
감 사 실	2	2	2					
기 획 예 산 과	1	1	1					
공 보 과	2	2	2					
세 정 과	9	9	9					
일 자 리 정 책 과	2	2	2					
회 계 과	6	6	3	3				
자 치 행 정 과	9	9	9					
사 회 복 지 과	12	12	12					
여 성 가 족 과	53	53	53					
민 원 봉 사 실	12	12	12					
관 광 과	12	12	11	1				
해 양 항 만 과	1	1		1				
환 경 보 호 과	1	1	1					
자 원 순 환 과	167	1	1					166
안 전 총 괄 과	29	29	29					
건 축 행 정 과	2	2	2					
건 설 과	9	1	1				8	
교 통 행 정 과	27	27	1	9	17			
의 회 사 무 국	9	9	9					
보 건 위 생 과	4	4	3	1				
건 강 증 진 과	31	31	31					
하 당 보 건 지 소	29	29	27	1	1			
교 육 체 육 과	2	2	2					
문 화 예 술 과	9	9	7	2				
문 예 시 설 관 리 과	10	10	6	4				
체 육 시 설 관 리 과	14	14		6	8			
목포자연사박물관	16	16	11	5				
상 하 수 도 행 정 과	3	3	3					
수 도 과	8	8	1	1	6			
하 수 과	6						6	
남 해 환 경 관 리 과	1	1	1					
북 향 환 경 관 리 과	3	3	1	2				
도 시 재 생 과	1	1	1					
공 원 녹 지 과	15	15	1	14				
환경시설관리사무소	4	4		4				
자동차등록사무소	5	5	5					

2. 청원경찰

부 서 별	계	경비,청원경찰	비 고
총 계	22	22	
소 계	6	6	
자 치 행 정 과	4	4	
건 설 과	2	2	
소 계	2	2	
의 회 사 무 국	2	2	
소 계	14	14	
수 도 과	3	3	
문 예 시 설 관 리 과	1	1	
목 포 자 연 사 박 물 관	3	3	
체 육 시 설 관 리 과	4	4	
환 경 시 설 관 리 사 무 소	3	3	

※ 1. 단순노무

- 행정보조 : 비서, 컴퓨터입력, 전산보조, 보건업무, 행정보조 등 단순 보조업무에 종사
 - 시설물관리 : 주차장관리, 시설청소 등 단순잡역 종사
 - 현장지도점검 : 주차단속 및 현장업무, 각종 강사, 계량기교체 등
2. 도로보수원 : 도로시설의 보수·유지·관리업무, 하수도준설에 종사하는 근로자
 3. 환경미화원 : 청사 및 청사주변 쓰레기수거·청소업무 등 환경미화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4. 청원경찰 : 「청원경찰법」에 의해 채용된 경비업무 및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고용된 산림보호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별표 2]

징 계 양 정 기 준(제51조 관련)

<청렴의 의무 위반 징계기준>

비위의 유형	금품·향응 등 재산상이익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수동	능동	
1. 위법·부당한 처분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금품·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공무원으로부터 받거나 직무관련 공무원에게 제공한 경우		강등-감봉	해임-정직	파면-강등
2.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받거나 제공하였으나, 그로 인하여 위법·부당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		해임-정직	파면-강등	파면-해임
3.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받거나 제공하고, 그로 인하여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파면-강등	파면-해임	파면

<징계기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공금 횡령·유용	해고	해고	해고-정직	정직-감봉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해고	해고	정직-감봉	감봉-견책
부정청탁	해고	해고-정직	정직-감봉	견책

【 별지 제4호 서식 】 (제12조 제2항 관련)

공무직 등 인사기록카드

(앞)

소	속		근로계약일		사 진
직	종		호주 및 관계	○○○의 ○	
성	명	(영문 : 혈액형)			
생년월일					
주 소				집전화	
				휴대폰	
학 력	부	터	까	지	학교명 및 전공학과
자 격 면 허				포상 및 서훈	
년 월 일		종 별		년 월 일	표 창 내 역
경 력 사 항	근무부서	근무기간	담 당 업 무		
	○○○○과				
기타사항					

(뒤)

교육 훈련	기 간	과 정 명	교육훈련기관	비 고
외국 출장	기 간	목 적	방 문 국 가	
징계 · 형벌	징계처분일	징계·형벌 종류	처 분 기 관	
근 무 성 적 평 가	일 자	평가등급(점수)	일 자	평가등급(점수)
승 급	호 봉	발령년월일	호 봉	발령년월일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용어의 정의) 1~6(생략) <신 설>	제2조(용어의 정의) 1~6(현행과 같음) 7.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제27조(복무관리자 및 복무상의 의무) 1~4(생략) <신 설>	제27조(복무관리자 및 복무상의 의무) 1~4(현행과 같음) 5. 법령 및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고, 친절·공정해야 되며, 질서를 존중해야 한다.
제34조(연차유급휴가) ①·②(생략) ③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공무원근로자 등에 대하여는 1개월간 개근시 1일의 유급 휴가를 준다. <u>다만, 최초 1년이 되었을 때는 그간에 사용한 연차휴가 일수를 15일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일수를 준다.</u>	제34조(연차유급휴가) ①·②(현행과 같음) ③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공무원근로자 등에 대하여는 1개월간 개근시 1일의 유급 휴가를 준다. <삭제>
제56조(산전·산후휴가, 유산휴가) ①~③(생략) ④ 여성 근로자가 임신 4개월 이후에 유산, 사산하였을 경우 산후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에 해당하는 유급휴가를 준다. ⑤ 임신 4개월 미만에 유산하였을 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제56조(산전·산후휴가, 유산휴가) ①~③(현행과 같음) ④ 여성 공무원이 임신 이후에 유산, 사산하였을 경우 유급휴가를 다음과 같이 준다. 다만, 인공중절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임신기간이 16주 미만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3.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⑤ <삭 제>
⑥ (생 략)	⑥ (현행 제6항과 같음)

[별표 1]

현행								개정안							
[별표 1] 공무원근로자 정수표(제6조 제4항 관련)								[별표 1] 공무원근로자 정수표(제6조 제4항 관련)							
1. 공무원근로자								1. 공무원근로자							
부서별	계	단순노무원				도로보수원	환경미화원	부서별	계	단순노무원				도로보수원	환경미화원
		소계	행정보조	시설장비유지	현장지도점검					소계	행정보조	시설장비유지	현장지도점검		
계	519	339	256	54	29	14	166	계	526	346	260	54	32	14	166
감사실	2	2	2					감사실	2	2	2				
기획예산과	1	1	1					기획예산과	1	1	1				
공보과	2	2	2					공보과	2	2	2				
세정과	9	9	9					세정과	9	9	9				
일자리정책과	2	2	2					일자리정책과	2	2	2				
회계과	6	6	3	3				회계과	6	6	3	3			
자치행정과	8	8	8					자치행정과	9	9	9				
사회복지과	12	12	12					사회복지과	12	12	12				
여성가족과	53	53	53					여성가족과	53	53	53				
민원봉사실	12	12	12					민원봉사실	12	12	12				
관광과	12	12	11	1				관광과	12	12	11	1			
해양항만과	1	1		1				해양항만과	1	1		1			
환경보호과	1	1	1					환경보호과	1	1	1				
자원순환과	167	1	1				166	자원순환과	167	1	1				166
안전총괄과	29	29	29					안전총괄과	29	29	29				
건축행정과	2	2	2					건축행정과	2	2	2				
건설과	9	1	1		0	8		건설과	9	1	1		0	8	
교통행정과	27	27	1	9	17			교통행정과	27	27	1	9	17		
의회사무국	9	9	9					의회사무국	9	9	9				
보건위생과	4	4	3	1				보건위생과	4	4	3	1			
건강증진과	29	29	29					건강증진과	31	31	31				
하당보건지소	29	29	27	1	1			하당보건지소	29	29	27	1	1		
교육체육과	2	2	2					교육체육과	2	2	2				
문화예술과	9	9	7	2				문화예술과	9	9	7	2			
문예시설관리과	10	10	6	4				문예시설관리과	10	10	6	4			
체육시설관리과	11	11		6	5			체육시설관리과	14	14		6	8		
목포자연사박물관	15	15	10	5				목포자연사박물관	16	16	11	5			
상하수도행정과	3	3	3					상하수도행정과	3	3	3				
수도과	8	8	1	1	6			수도과	8	8	1	1	6		
하수과	6					6		하수과	6					6	
남해환경관리과	1	1	1					남해환경관리과	1	1	1				
북해환경관리과	3	3	1	2				북해환경관리과	3	3	1	2			
도시재생과	1	1	1					도시재생과	1	1	1				
공원녹지과	15	15	1	14				공원녹지과	15	15	1	14			
환경사업사무소	4	4		4				환경사업사무소	4	4		4			
자동차등록사무소	5	5	5					자동차등록사무소	5	5	5				

[별표 2]

현행		개정안				
[별표 2] 징계양정기준 (제51조 관련)		[별표 2] 징계양정기준 (제51조 관련) ＜청렴의 의무 위반 징계기준＞				
구분	양정기준	금품·향응 등 재산상 이익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견책	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경우	비위의 유형		수동	능동	
감봉	가. 비위의 도가 중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중과실인 경우 나. 최근 2년 이내에 2회 이상 견책처분을 받은 후 다시 견책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위법·부당한 처분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금품·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공무원으로부터 받거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제공한 경우		강등 - 감봉	해임 - 정직	파면 - 강등
정직	가. 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나. 최근 2년 이내에 2회 이상 감봉처분을 받은 후 다시 감봉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받거나 제공하였으나, 그로 인하여 위법·부당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		해임 - 정직	파면 - 강등	파면 - 해임
해고	가.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나. 최근 2년 이내에 2회 이상 정직처분을 받은 후 다시 정직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받거나 제공하고, 그로 인하여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파면 - 강등	파면 - 해임	파면
＜징계기준＞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비위의 유형						
공금 횡령·유용		해고	해고	해고-정직	정직-감봉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해고	해고	정직-감봉	감봉-견책	
부정청탁		해고	해고-정직	정직-감봉	견책	

[별지 제4호 서식]

현행				개정안				
[별지 제4호 서식] 공무직 등 인사기록카드 (앞)				[별지 제4호 서식] 공무직 등 인사기록카드 (앞)				
소속		근로 계약일		소속		근로 계약일		
직종		호주 및 관계	○○○의 ○	직종		호주 및 관계	○○○의 ○	
성명	(영문 : 혈액형)			성명	(영문 : 혈액형)			
주민 등록 번호				생년 월일				
주소			집전화	주소			집전화	
			휴대폰				휴대폰	
학력	부	터	까	지	부	터	까	지
	학교명 및 전공학과				학교명 및 전공학과			
자 격 면 허		포상 및 서훈		자 격 면 허		포상 및 서훈		
년 월 일	종 별	년 월 일	표 창 내 역	년 월 일	종 별	년 월 일	표 창 내 역	
경력 사항	근무 부서	근무기간	담당 업무	경력 사항	근무 부서	근무기간	담당 업무	
	○○ ○○ 과				○○ ○○ 과			
기타 사항				기타 사항				

비용소요 추계서

1. 관련 법규명

○ 목포시 공무원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규정

2. 정원의 변동 내역

○ 정원 및 비용 증감내역

구 분	증감 인원	소요비용 내역 (원)			비고
		인원	1인당 보수액	총 금액	
증원	7	7	30,156,390	211,094,730	3호봉

3. 비용 소요 내역

(가군 3호봉 기준)

구 분	소요비용(원)	산 출 근 거	비고
총 계	30,156,390		
○ 인건비	27,450,840		
- 기본급	16,444,080	1,370,340원*12월	
- 수당	11,006,760		
·상여금	5,481,360	1,370,340원*400%	
·직무수당	1,200,000	100,000원*12월	
·정액급식비	960,000	80,000원*12월	
·교통보조비	600,000	50,000원*12월	
·조정수당	1,200,000	100,000원*12월	
·명절휴가비	822,200	1,370,340원*30%*2회	
·연가보상비	743,200	74,320원*10일	
○ 이전경비	2,705,550		
- 국민건강보험금	826,510	(인건비-정액급식비)*3.12%	
- 장기요양보험금	60,990	(국민건강보험금)*7.38%	
- 국민연금	1,192,080	(인건비-정액급식비)*4.5%	
- 고용보험금	397,360	(인건비-정액급식비)*1.5%	
- 산재보험금	228,610	(인건비-정액급식비)*0.863%	

4. 작성자

자치행정복지국 자치행정과장 박 남 규

목포시 고시 제2018-120호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건물 등이 멸실되어 도로명주소를 폐지하고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폐지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27일

목 포 시 장

○ 폐지하는 도로명주소

순번	폐지하는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 사유
	불 임	참 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민원봉사실(☎061-270-863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조서)

연번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사유
68	달성길38번길 8	2018. 08. 27.	건물멸실

목포시 공고 제2018-1100호

목포시의회 부의 안건 공고

지방자치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목포시의회에 부의할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7일

목 포 시 장

□ 부의안건 명

- 목포시 액화석유가스 복합재료용기 보급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목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목포시 (재)목포수산물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
- 전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
- 재단법인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출연금 동의안
- 목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목포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목포시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897 개항문화거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안
- ‘서산동 보리마당’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안
- 2018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 2017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서안
- 2017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

시 정 알 림 판

시민 영어 무료강좌 접수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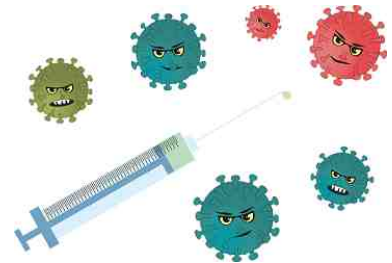


- 접수기간 : 2018. 8. 14.(화)~9. 3.(월)
- 수강기간 : 2018. 9. 4.(화)~10. 23.(화) [총20회]
- 수강시간 : 매주 3회(화·목·금), 14:00~15:30
- 장 소 : 목포벤처지원센터 2층 대회의실(신청호시장 옆)
- 수강대상 : 목포시민 누구나
- 접수장소 : 목포시청 일자리정책과, 각 동 행정복지센터
- 접수방법 : 방문, 전화(270-8457), 팩스(270-8791)

일자리정책과 ☎ 061-270-8457

2018년 어린이 무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실시

- 접종대상 : 생후 6개월~만 12세(초등학생)이하 어린이(2006. 1. 1.~2018. 8. 31.출생자)
- 접종일시
 - 2회 접종 대상자(생애최초 접종시) : 2018. 9. 11.(화)부터
 - 1회 접종 대상자 : 2018. 10. 2.(화)부터
- 접종장소 : 관내 위탁 의료기관(21개소), 전국 위탁 의료기관
※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nip.cdc.go.kr)에서 확인 가능
- 접 종 비 : 무 료



건강증진과 ☎ 061-270-8921

2018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

- 운영기간 : 2018. 9. 1.(토)~10. 31.(수) [2개월]
- 운영시간 : 09:00~18:00(입장 시간은 17:30까지) ※ 월요일 휴관
- 입 장 권 : 1매당 10,000원(사전판매 8,000원) ※ 어린이, 청소년 무료
- 전시주제 : 오늘의 수묵 - 어제에 묻고 내일에 답하다
- 장 소 : 전라남도 목포시(목포문화예술회관), 진도군(운림산방) 일원
※ 3시간 간격으로 셔틀버스(목포역↔버스터미널↔목포문화예술회관) 운행
- 전시방향 : 「목포 - 현대 수묵의 재창조」



전시관명	전시주제	전 시 구 성
비엔날레 1관 (목포문화예술회관)	수묵의 경계	◦ 수묵의 새로운 해석에 의한 현대 수묵 ◦ 미디어 및 설치미술 등 새로운 수묵 표현 작품
비엔날레 2관 (노적봉예술공원미술관)	수묵의 숲	◦ 대형 수묵 설치 및 평면 작업 ◦ 실험적 전시장 구성으로 작품과 관객의 소통
비엔날레 3관 (목포연안여객선터미널갤러리)	종가의 향기	◦ 전남의 대표적 자산인 종가집의 전통과 스토리를 정리하고 전경을 수묵으로 그려 전시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사무국 ☎ 061-280-5879

시 정 알 림 판

목포시 민원 1회 방문 및 사회취약계층 전용 창구 운영

- 운영기간 : 연중(공·휴무일 제외)
- 운영장소 : 목포시청 민원봉사실 8번 창구
- 대 상 : 민원창구를 이용하는 모든 민원인
- 운영내용 : 민원행정서비스 확대 실시
 - 민원 1회 방문 상담창구(타부서 직원 연결 가능)
 - 사회취약계층 전용 상담창구(장애인 보조기구 등 완비)



민원봉사실 ☎ 061-270-8565, 3518

2018년 전라남도·목포시 사회조사 실시 안내



- 조 사 명 : 2018년 전라남도 목포시 사회조사
 - ※ 사회조사란? 시민들의 주요관심사, 생활만족도 등 생활환경의 전반적인 부분을 조사하여 목포시의 정책 수립 및 평가분석, 학술연구 등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
- 조사기간 : 2018. 8. 29.(수)~9. 10.(월)
- 실시기관 : 전라남도·목포시

- 대 상 : 표본 1,008가구
- 조사방법 : 조사원이 세대를 방문하여 조사

정보통신과 ☎ 061-270-8317

목포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신청자 모집

- 신청기간 : 2018. 8. 27.(월)~9. 28.(금) [33일간]
- 지원대상(①+②모두 충족)
 - ① 전국 대학교에 재학중이며, 부모 또는 본인이 목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② 한국장학재단에서 2018년도 1학기 "취업 후 상환 학자금"을 대출받은 대학생
- 제외대상
 - 퇴학제적된 자, 휴학생, 군입대자, 대학원생, 허위사실 또는 이중으로 지원받은 자
 - 재학증명서, 정보제공 동의서 등 신청구비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대출 정보제공 시점에서 대상자가 대출원리금 전액 상환하여 재단에 상환할 대출 원리금이 없는 경우
- 지원금액 : 2018년도 1학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에 대한 2018년도 1학기 발생 본인부담 이자
- 지원시기 : 2018. 10월까지
- 신청방법 : 목포시청 일자리정책과 방문 접수
 - ※ 신청서류 : 신청서(목포시 홈페이지-고시공고), 재학증명서, 학생 주민등록 초본, 본인의 주소지가 관외인 경우에는 부·모의 주민등록 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일자리정책과 ☎ 061-270-8490